

의안번호	2200541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4.08.09.
추계번호	24D09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7조 제3항(구조금의 종류 등)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함(제3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와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 미대상 - 기 수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단위: 백만원)												
		<table><tr><td>현행 사업명</td><td>2022</td><td>2023</td><td>2024</td></tr><tr><td>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td><td>16,996</td><td>17,270</td><td>21,099</td></tr><tr><td>- 홍보협의등점검등</td><td>220</td><td>225</td><td>220</td></tr></table>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6,996	17,270	21,099	- 홍보협의등점검등	220	225	220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6,996	17,270	21,099									
- 홍보협의등점검등	220	225	220											
2	안 제17조 제3항(구조금의 종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사유

-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 기준 전체 구조금은 148건, 89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유족구조금이 110건, 83억 4,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연도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9	305	11,516	185	9,279	34	1,140	86	1,097
2020	206	9,567	145	8,214	27	985	34	367
2021	191	9,792	144	8,895	25	639	22	258
2022	189	9,503	138	8,406	23	822	28	275
2023	148	8,973	110	8,341	14	409	24	223

자료: 법무부

- 개정안에 따라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선순위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에 따르면,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지만, 그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 제외)하여 구조금이 미지급된 건수나 금액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법무부는 구조피해자 사망,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급결정의 선후관계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구조금 신청에서 지급까

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생빈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 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 자격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 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 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나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이 미지급된 건수 및 금액 관련 자료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비율이 대략 1.01%임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전체 구조금 89 억 7,300만원 중 1% 수준인 8,973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